

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 신설 (안 제9조의 2)
 -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, 일정한 사유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 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

4.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88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정해제) ①군수는 제8조및9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.

1.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
2.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
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의2(지정해제) ①군수는 제8조및9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</u> <u>2.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</u> <u>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</u>